

#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수 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8월 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손상’을 ‘오염·훼손’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거된 국기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